

제103조 (이용대상자 및 순위)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거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보호자의 사정으로 가정에서 모실 수 없는 노인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 받기를 원하는 자로 한다.

제2절 모집방법

제104조 (모집방법)

1.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2. 입소정원 내에서 입소전화 상담 및 기관 자체의 홈페이지나 공단 홈페이지, 기타 인터넷/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사이버 홍보 등을 통하여 대상자를 발굴 모집한다.

제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5조 (계약기간) 입소 대상자와의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법의 등급판정에 따라 발부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유효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고 계약해제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속되는 것으로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변경, 기관의 법적 상태변경, 또는 수급자의 등급변경 등으로 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협의에 의해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6조 (계약목적) 이용계약의 목적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간의 요양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 비용 등을 명확히 정의하고 시설과 보호자(수급자)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방지하며 상호 준수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제107조 (입소비용, 월이용료) 대상자의 입소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붙임 1과 같은 비용체계를 가진다. 입소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하는 1일당수가로 환산하여 지급하는 보험료와 개인이 자부담하는 급여 부분, 그리고 비급여 부분으로 구성된다. 비급여부분의 상세 내역은 본 규정 제107조에 명시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가 변경되거나 기관이 비용체계를 변경할 때는 본규정 별표1의 도표1과 도표2의 내용을 변경하여 첨부한다. 상기 입소비용 관련 자료는 매년 변경되는 급여수가 결정되면 운영규정의 개정없이 별표1~4의 내용을 교체하도록 한다.

●별표1~4: 수급대상자 입소비용 상세내역 참조

제108조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기타 비용부담액)

1. 비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식재료비, 이미용비, 간식비, 상급침실이용비 등 기타 추가로 발생하는 급여를 말한다.

2. 비급여 비용 항목은 실비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3. 입소자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 비용(실비)을 납부해야 한다.

제10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한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입소어르신이 안전한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 요구할 권리

②.입소어르신의 신변이상이 생겼을 때 시설로부터 상세한 사항을 보고받을 권리

③.급여제공계약의 주 당사자로서 입소어르신의 제반 사항에 대한 최종의사결정 권리

3.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어르신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납부 의무

②. 입소어르신 및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③.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련 및 필요한 자료 제공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의무

⑥. 기타 시설의 규칙 이행 의무

제110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어르신 또는 보호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할 때

2. 입소어르신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성질환이 발병하거나 배회 또는 폭력성 행동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의 문제로 다른 입소어르신에게 심한 지장을 줄때

3. 1회 이상 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여 시설에서 2회 이상 납부를 요청하는 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았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입소어르신이 사망을 했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시설이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속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5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제11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 변경 방법과 절차는 입소어르신이나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6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12조 (서비스의 개요와 그 비용의 부담)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요는 본 조항 1~8호를 기준으로 하며, 그 비용은 본 규정 별표1에 기재된 입소비용에 포함되며 규정에서 정한 비용 외에 추가로 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으로 특별한 서비스를 요청하는 경우 실비를 원칙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상담서비스: 전화, 내방, 방문상담 서비스
2. 의료 및 간호서비스: 건강 체크, 한의원, 병원 정기 의료진료 서비스
3. 재활서비스: 정기적 운동치료, 현실감각 훈련 등 기능회복 및 재활
4. 영양관리 서비스: 식사 3회, 간식 1회를 제공하여 영양섭취를 통한 건강 유지 및 관리
5. 위생서비스: 이·미용 목욕 등의 위생관리
6. 일상생활서비스: 대·소변 수발 등의 일상생활 서비스
7. 심리·사회증진서비스: 음악활동, 인지활동, 미술활동, 원예활동,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을 통한 심리·사회적 기능회복 유도
8. 정서지원 서비스: 위안잔치, 생일잔치, 나들이, 산책 등의 심리정서 프로그램

제113조 (입소자 건강관리)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축탁의, 간호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 및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 예방에 힘쓴다.